

협동적 노동자소유에 대한 세계선언의 발표

CICOPA 집행위원회는 2004년 2월 17일 회의를 통해 '협동적 노동자소유에 대한 선언(World Declaration on Cooperative Worker Ownership: 이하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는 2002년 9월 CICOPA 미주에서 협동적 노동자소유에 대한 기준의 필요를 제기한 이후 진행된 3차례의 의견수렴과 2003년 9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있었던 CICOPA 총회에서의 원칙적 합의, 그리고 집행위원회에서의 문구수정을 통한 결과였다. '선언'은 영어와 스페인어를 기준언어로 작성되었다.

선언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다. 이는 1995년 맨체스터에서 채택된 ICA의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 및 2002년 제네바에서 채택된 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한 ILO 권고 193 조을 보완하고 있다. 둘째, 개발, 고용, 사회적 통합, 빈곤퇴치, 평화와 민주주의에서 노동자협동조합과 협동적 노동자소유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한다. 셋째, 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한 ILO 권고 193 조에 담겨진 일반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노동자협동조합 및 협동적 노동자소유에 대한 제도화와 활성화를 진행할 것을 정부, 지자체, 국제기구 및 고용주조직/노동조합에 촉구한다.

협동적 노동자소유에 대한 번역에 있어서, CICOPA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협동적 노동자소유는 영어로 cooperative worker ownership, 스페인어로는

trabajo asociado 로 표현된다. CICOPA 는 소유(ownership)의 개념이 재산(property) 보다 의미론적으로 넓은 것임을 강조한다. 소유는 전유(appropriation), 양도(empowerment), 통제(control)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스페인어에서 사용되는 asociado 는 민간단체와 동일한 메커니즘(선거, 총회, 이사회 등)을 통해 노동이 조직된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한국어에 있어서는 노동자들이 소유의 주체라는 측면과 이들 노동자들이 협동적 방식을 통해 조직을 구성한다는 정신을 반영하면서,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법적지위가 없고 인식이 취약한 현실을 고려하여, '협동적 노동자소유'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임노동 관계도 자영업도 아닌 노동의 독특한 결합방식임을 표현하고 있어야 한다고 CICOPA 는 권고하고 있다.

2005년 9월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있었던 ICA 총회에서 '선언'은 공식 채택되었으며, 이를 통해 노동자협동조합과 협동적 노동자소유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협동적 노동자소유 1)에 대한 세계 선언

이 선언은 2005 년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있었던 ICA 총회에서 승인되었다.

일반사항

1. 인류는 노동을 조직하는 형태의 질적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왔으며, 보다 좋고, 보다 공정하며, 보다 품위있는 노동관계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2. 오늘날, 인류는 3 가지 기본적인 양태를 가지고, 노동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a) 자신의 능력과 자기조절에 기반하는 독립적인 자가고용 (자영) b)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종속되는 임금노동자, 이때 사용주는 개별적이거나 집합적인 협상을 통해 결정된 보상을 제공한다. c) 세 번째 형태는 노동자소유라고 불리는 것인데, 개별화된 노동도 아니고 전통적인 임금노동도 아니면서, 노동과 경영이 결합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말한다.
3. 노동자협동조합은 노동자소유의 조직형태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발전형태이며, 오늘날 주목을 받고 있다. 노동자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ICA 선언과

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한 ILO 권고 193 조에 담겨있는 보편적인 협동조합 원칙, 가치, 작동수단을 바탕으로 하여 구성된 조직형태이다.

4. 노동자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ICA 선언에 의해 기본적으로 규정받는다.

하지만, 다른 범주에 속하는 협동조합들과는 구분되게, 노동자협동조합에만 적용되는 전세계적인 수준의 개념정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의는 협동적 노동자소유의 일관성과 보편적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발전을 자극할 것이다. 또한 협동적 노동자소유라는 개념의 일탈과 남용을 방지하면서,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협동적 노동자소유가 갖는 사회적/경제적 기능을 전세계에 알릴 것이다.

5. 선언은 협동적 노동자소유의 중요성, 노동자협동조합의 활성화 그리고 정부, 국제기구, 고용주조직, 노동조합, 다른 범주에 속한 협동조합과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필요하다.

선언은 노동자협동조합의 발전과 활성화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협동조합이 실업과 사회적 배제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그리고 가장 진보적이고, 공정하며, 품위있는 형태의 노동관계와 부의 생산/분배, 소유와 경제의 민주화에 대한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인정받기 위해 필요하다.

6. CICOPA 에는 개별적인 장인들과 다른 형태의 협동조합 조직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은 노동자협동조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언의 내용은 노동자들의 이해대변을 허용하고, 다른 일반조합원과는 구별되는 멤버십과 소유권을 부여하는 이용자들의 협동조합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소속된 노동자들에게 협동조합적 장점을 가져다주는 유한회사(workers' limited societies/sociedades anonimas laborales)나 복지서비스의 제공과는 별도로 구성원들의 특별한 노동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격의 모든 기업들처럼, 인간의 노동과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모든 형태의 경영에도 적용될 수 있다.

위에 언급된 사항들에 기초하여, CICOPA 는 협동적 노동자소유에 대한 세계선언을 만장일치로 승인한다.

I. 기본적인 성격

노동자협동조합은 협동조합정체성에 대한 ICA 선언에 담긴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에 기초하고, 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한 ILO 권고 193²⁾의 내용에 기반하여 다음의 기본적인 성격을 따라야 한다.

1. 노동자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 조합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를 생산하는 것, 인간노동을 품위있게 하는 것, 노동자들의 민주적인 자가경영을 가능케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인의 노동과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참여하는데 있어서, 조합원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멤버십은 작업장이 존재해야 가능하다.

3.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노동은 조합원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해당 노동자협동조합기업에서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조합원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4. 노동자조합원과 그들의 협동조합과의 관계는 전통적인 임금노동, 그리고 자영노동과 달라야 한다.

5. 노동자협동조합의 내부규정은 노동자조합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동의되고, 받아들여지는 체제에 의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어야 한다.

6. 노동자협동조합은 노동관계와 경영, 그리고 생산수단의 사용과 관리에 있어서 국가 및 제 3 자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II. 내적작동규칙

노동자협동조합은 내적인 작동에서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1. 조합원들의 지위, 생산성, 기업의 경제적 능력에 의해 요구되는 기능, 책임, 복잡성, 특수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최고와 최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조합원들의 노동에 공평하게 보상해야 한다.

2. 자본의 증식과 배분불가능한 유보자금 및 기금의 적절한 증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적절한 기능과 좋은 작업환경을 갖추기 위한 물리적, 기술적 설비를 작업장에 제공해야 한다.

4. 노동자조합원들에게 적절한 사회복지, 사회적 안전망, 산재 시스템을 제공하고, 모성보호, 육아, 미성년 노동의 영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호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5. 조직의 결정과정과 경영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6. 노동자협동조합모델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발전을 담보하고, 혁신과 좋은 경영을 자극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향상적인 교육, 훈련과 정보제공이 보장되어야 한다.

7. 가족의 삶의 조건이 향상되고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기여해야 한다.

8. 임금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보다 유연하거나 일시적으로 만드는 목적을 가진 수단으로 전략하거나, 일자리에 대한 임시방편이 되는 것에 대항하여 투쟁해야 한다.

III. 협동조합운동 내에서의 관계

다음과 같이 협동조합운동 일반에 강력히 요구한다.

1. 노동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세계협동조합운동에서 주요한 우선과제의 하나로 삼고, 이러한 유형의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

2. 노동자협동조합의 발전을 육성하는 전략적인 동맹을 구축하고, 적절한 재정수단에서의 접근과 노동자협동조합들이 생산하는 서비스와 상품의 활성화를 포함하여 노동자협동조합의 기업적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만들 것.

3. 다른 범주의 협동조합들이 노동자협동조합의 리스크 캐피탈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기회비용을 상쇄하는 경제적 보상과 경영에의 참여를 하도록 보장하되, 노동자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협하지 않는 자본형성 메커니즘을 만들어낼 것.

4. 지역, 국가, 국제적인 수준에서 노동자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조직들과 그들 간의 협력을 활성화시킬 것. 또한 효과적인 경영서비스를 제공하고, 협동조합운동을 강화하며, 사회적 통합과 연대로 특징지워지는 사회모델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원조직, 경영그룹, 컨소시엄, 협동조합간 공동의 사회경제적 협약의 체결을 지원할 것³⁾.

5. 국가가 적절한 법제화를 포함하여 노동자협동조합 형태의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수단을 만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니셔티브를 활성화시킬 것. 여기에는 법제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의회에서의 청원 등이 포함된다.

6. 가능한 범위에서 협동조합의 임금노동자들을 노동자조합원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활성화할 것.

IV. 국가, 지역, 정부간기구와의 관계

1.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 집단의 노동통합을 위한 효과적인 행위자로서 노동자협동조합의 활성화와 발전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자협동조합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실업과 사회양극화와 같이 배제적인 세계화와 개발의 결과로 나타난 주요한 문제들에 맞서기 위하여, 정부정책과 프로그램에 노동자협동조합 유형의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시켜야 한다.

2. 협동적 노동자소유가 실질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국가는 이러한 유형의 협동조합이 갖는 특별한 법적성격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협동조합이 최적의

조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며, 노동자조합원들과 지역사회 전반의 이해관계 속에서 노동자협동조합이 갖는 경영적 창의성과 잠재력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적이고, 지역적인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3. 특별히 국가는 아래의 사항들을 해야 한다.

- 입법을 통해, 협동적 노동자소유가 임금노동, 자영업, 독립노동과는 다른 노동과 산업관계에 의해 규정됨을 인정하고, 이에 조응하는 규범과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전통적인 임금관계에 있는 노동자협동조합의 비조합원노동자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노동법의 적용을 보장해야 한다.

- 노동자협동조합들에 '관찰은 일자리'에 대한 ILO 의 개념을 적용하고, 그들의 특별한 노동관계를 고려하면서 건강, 연금, 실업보험, 산재, 노동안전의 영역에서 사회적 보호를 규정하는 명백하고, 정확하며, 일관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 노동자협동조합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활성화시키는 재정체계와 자율적인 경영을 규정하는 특별한 법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로부터 적절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협동조합들은 등록되거나 감독되어야 한다.

4. 정부는 노동자협동조합에 의해 제안되는 사업프로젝트를 위해서 특정한 공공기금, 대부보증, 재정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위한 계약 등을 만들어내고, 협동조합운동과의 경제적 동맹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적절한 재정적 조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5.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기업 이니셔티브, 양성평등, 빈곤과 주변부화에 대한 투쟁을 위한 국제적/지역적 협력의 틀거리에서, 국가와 지역, 정부간 조직들은 성공적인 경험의 교류와 이와 같은 정보에 기반한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키고, 노동자협동조합들의 기업적, 제도적 지원을 위한 구조의 개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6. 협동적 노동자소유는 기업적 변화와 재구조화, 창업, 민영화, 위기기업의 전환 그리고 상속자없는 기업의 전환의 과정에서, 그리고 공공서비스와 공공조달에서의 위탁(이 과정에서 국가는 노동자협동조합기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활성화시킨다는 단서조항을 규정해야 한다)에서 하나의 선택이자, 기업적 모델로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7. 국가와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협동조합을 포함한 특별한 경제영역을 공고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ILO 권고 193 조의 가이드라인을 강조해야 한다⁴⁾. 이 영역은 이윤이 첫 번째 동기가 아니고, 연대, 참여 그리고 경제적 민주주의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영역이다.

V. 고용주조직들과의 관계

고용주조직들은 기업적인 부가가치와 더불어 지속가능하고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형태로서, 그리고 위기에 처하거나 청산절차에 있는 회사의 회복을 위한 적절한 탈출전략으로서 협동적 노동자소유의 발전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동시에 노동자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기업적 발전을 허용하며, 이러한 협동적 노동의 양태가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남용이 없어야 한다.

VI. 노동자조직들과의 관계

협동조합운동은 노동자조직들로 하여금 임금노동의 전통적인 갈등을 극복하는 노동관계와 소유의 독특한 양상으로서 협동적 노동자소유의 특성과 핵심을 이해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노동자협동조합이 인간사회에 주는 전망과 중요성의 관점에서 노동자조직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의 대표체로서 노동조합과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해야 한다⁵⁾.

이 선언은 전세계차원의 정부, 고용자조직, 노동자조직에 의해 승인된 ILO 권고 193 조에 부응하고 있다⁶⁾. 따라서 우리는 인간성에 영향을 주고, 세계평화와 인권을 위협하는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실업의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서 노동자협동조합이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고용자조직, 노동자조직들이 이를 진지하게 고려해주시기를 희망한다.

-
- 1) 협동적 노동자소유에 대한 번역에 있어서, CICOPA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협동적 노동자소유는 영어로 cooperative worker ownership, 스페인어로는 trabajo asociado 로 표현된다. CICOPA는 소유(ownership)의 개념이 재산(property) 보다 의미론적으로 넓은 것임을 강조한다. 소유는 전유(appropriation), 양도(empowerment), 통제(control)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스페인어에서 사용되는 asociado 는 민간단체와 동일한 메커니즘(선거, 총회, 이사회 등)을 통해 노동이 조직된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한국어에 있어서는 노동자들이 소유의 주체라는 측면과 이들 노동자들이 협동적 방식을 통해 조직을 구성한다는 정신을 반영하면서,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법적지위가 없고 인식이 취약한 현실을 고려하여 '협동적 노동자소유'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임노동 관계도 자영업도 아닌 노동의 독특한 결합방식임을 표현하고 있어야 한다고 CICOPA 는 권고하고 있다.
 - 2) 협동조합의 정의는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와 바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기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개인들의 자치적인 결사체를 의미한다." (ILO R193, art. 2). 협동조합의 원칙이란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가입, 민주적인 통제, 조합원들의 경제적 참여, 자치와 독립, 교육, 훈련 그리고 정보, 협동조합간 연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다." (ILO R193, art. 3 (b)). 협동조합의 가치는 "자조, 스스로의 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함 그리고 연대 또한 정직, 개방성, 사회적 책임과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윤리적 가치이다" (ILO R193, art 3 (a)).
 - 3) " 특별한 수단의 채택은 연대의 정신에 기반한 조직인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의 욕구와 소외계층의 사회적 통합을 포함하는 사회적 욕구에 대답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고무되어야 한다. (ILO Recommendation 193/2002, art. 5).

- 4) 균형잡힌 사회는 강력한 공공 및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강력한 협동조합, 상호공제조직 그리고 다른 사회적이고 비정부적인 부문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ILO R.193, art.6); 수단은 발전정도에 무관하게 모든 국가에서 협동조합의 잠재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채택되어야 하는데, 이는 협동조합들과 그 조합원들에게 아래의 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다. (...)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요구에 응답하는, 협동조합을 포함한 실행가능하고 역동적이며 독특한 경제영역의 수립과 확장 (ILO R.193, art.4).

- 5) 이와 관련하여, ILO 권고 193/2002 는 “노동자조직들은 노동자협동조합 권리의 실행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art. 16g).

- 6) 권고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협동조합의 활성화는 국가적인 차원의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art 7 (1))